

2025-09-05

(25-5552)

페이지: 1/2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문: 영어

통보

본 통보문은 10.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1. 통보국가: 중국

해당되는 경우, 관련 지방정부의 명령(제 3.2 조 및 제 7.2 조):

2. 담당기관:

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

3. 근거 조항 제 2.9.2 조 [X], 제 2.10.1 조 [], 제 5.6.2 조 [], 제 5.7.1 조 [], 제 3.2 조 [], 제 7.2 조 [], 기타:

4. 해당 제품(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.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):
신에너지 자동차 (HS 코드: 8701; 8702; 8703; 8704)(이러한 HS 코드에 포함된 일부 제품)

5. 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(제목, 페이지 수, 접근 방법):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에 관한 규정 (19 페이지, 중국어)

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/또는 연락처 링크: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CHN/25_05857_00_x.pdf

6. 내용: 본 문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활동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을 규정한다.

7. 목적 및 근거(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):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

8. 관련 문서:

-

9. 채택 예정일: 추후 결정

시행 예정일: 추후 결정

10. 의견 제공

의견 마감일: 2025-11-04

통보일로부터 60 일 [X]

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:

중화인민공화국 WTO/TBT 국가통보질의센터

전화: +86 10 57954633/ 57954627

이메일: tbt@customs.gov.cn